

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5. 4. 23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김해철 의원 등 12명(이선주, 강한곤, 박종길, 고명옥, 박정환, 정순옥, 정창근, 김장관, 김정희, 도하석, 장호섭)
- 발의일자: 2025. 4. 9.(수)
- 회부일자: 2025. 4. 9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4. 23.)

2. 제안이유

-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과 유아숲체험원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산림교육계획 수립·시행 및 사업추진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지원 규정(안 제6조 ~ 제8조)
- 산림교육시설의 지정·운영 등(안 제9조)
- 유아숲체험원 운영(안 제10조)

-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11조 ~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4. 9.~4. 20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지원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, 산림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,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산림교육 지원, 유아숲체험원 운영,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